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08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박희승의원안)	3

I. 개요

1.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0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희승의원 등 62인
- (2) 제 안 일 : 2024. 7. 2.
- (3) 회 부 일 : 2024. 7.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지출로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은 취약한 상황임. 수도권과 대도시 에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별 건강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내과·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같은 질병임에도 사는 지역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다르고, 심지어 생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 경쟁력 자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재난 요소가 되고 있으나,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공공의료와 지역医료를 담당할 인프라와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렇기에 공공보건의료의 지역·분야별 균형적 제공과 공중보건위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큼.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임.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공공의료 역량을 대폭 확충해야 함.

이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박희승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4조제1항) ○ 특례대상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서울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국립인천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 - 도서관 운영법인 -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 법인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 공무원 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특례내용: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2025. 12. 31.	□ 공공보건의료대학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에 추가 ○ 특례대상 -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운영 비영리법인, 국립서울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국립인천대학법인 및 발전기금, <u>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 적용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 박희승의원안 2024. 7. 2. 제출(의안번호 1308),

□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01호)의 제정을 전제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발전기금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는 「법인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의 추진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임.

동 손금산입특례는 1976년 「조세감면법」 제13조제5항의 ‘사립학교수익사업으로부터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부터 도입되어, 그 대상이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체에 대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었고 그 대상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단체 등이 추가되었음. 이후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의 전부개정으로 1999년부터

적용기한이 설정되었고, 적용기한이 중단 없이 연장되어 왔음.

동 손금산입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은 연간 1,000억원 대의 조세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법인세	1,538	1,675	1,524	1,094	404	42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본 개정안의 손금산입특례에 따라 사회적으로 그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제한적인 공공의료 복지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현행법상 동 특례의 적용대상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 병원, 도서관, 박물관 등의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통하여 가치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대학 역시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라는 활동을 수행하며 가치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특례대상과 마찬가지로 고유목적사업을 장려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

참고로, 동 손금산입특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2016년 시행된 동 과

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¹⁾에 따르면, 동 손금산입특례에 따른 고유사업확대 효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손금산입특례로 인하여 수익사업소득이 1원 증가하면 고유목적사업지출이 0.2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한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한 의료인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무복무기관에서²⁾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어, 동 개정안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로 대학의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재 사립대·국립대 및 서울대·인천대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대학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규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안의 논의경과에 따라 심사될 필요가 있음.

1) 기획재정부, '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IV)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2016. 9, p.18

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7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시·도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문 의 처
02)6788-5155